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환경부 자료 제공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이후 국외, 연륙 등에서 시멘트의 증감속으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재활용제품의 유행성 등 기준 설정 및 '인증 제도' 도입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병치폐기물 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권집지 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거나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보전은 물론 자원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된 것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친환경적으로 처리 또는 순환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1의2. “중간폐기물”이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물질 중 재활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물질과 폐기물의 중간처분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말한다..

6.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등을 말한다.

6의2.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활동 또는”을 “물질적 재활용과”로,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를 각각 “물질적 재활용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을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산공정의 개발 및 시설안에서의 재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주민의 건강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처리과정에서 그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여야 하고, 환경보전, 공공복리 등 공익에 합당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처리, 그 제거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인자 및 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내발생 폐기물은 가능한 국내에서 처리하고, 국외발생 폐기물의 수입은 가급적 억제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보다는 물질적 재활용을 우선하여 자원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집·운반·처리방법”을 “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 자원생산성 향상 등”으로, “바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와 변화 추세를”을 “조사대상, 시기 및 방법 등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간폐기물이 생성된 경우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수집·운반·처리하여야”를 “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처리”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신고자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이 없이도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중 “수집·운반·처리”를 “처리”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수집·운반·처리”를 각각 “처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25조제3항에 따른”을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신고자”로, “설치·운영하는 자”를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에 따른”을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을 “배출·운반·처분 또는 재활용하는”으로,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을 “배출·운반·처분 또는 재활용할”로, “입력하여야”를 “입력(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한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4항 중 “제4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각각 “처리자”를 “처분·재활용자”로 하고, “처리 과정”을 “처분·재활용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처리”를 “처분”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 제18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 중에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거나 폐기물 인계서를 지녀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거나 내보여야 한다.

제2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반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2. 수입된 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의3제1항제2호 중 “제25조제3항에 따른”을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6조제1항에 따른”을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반·처리”를 “처리”로, “수입·운반 또는 처리”를 “수입·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각각 “처리”로,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야”를 “처리하여야”로 한다.

제25조 앞의 “제3장 삭제”를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을 삽입한다.

제25조 앞의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을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 및 허가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의 업종 구분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영업내용 및 처리분야별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재활용업 :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영업으로서 중간폐기물을 제조하거나 재활용을 완료하는 영업(생활폐기물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영업에 한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③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



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제4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사전 적합통보) ①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분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영업내용·처리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최종처분업과 폐기물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

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②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해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의5(준수사항) ①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제1항”을 “제4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0조제8항”을 “제40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을 “처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5조제5항에 따른”을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5조제7항에 따른”을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5조제8항”을 “제25조의5제1항”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를 “처리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5조제9항”을 “제25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25조제10항”을 “제25조제3항”으로,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를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28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제2항제16호 중 “제33조제2항에 따른”을 “제3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48조에 따른”을 “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에 따른”으로, “조치명령”을 “명령”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과징금 처분)”을 “(폐기물처리업자의 과징금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폐기물처리업체”를 “폐기물처리업자가”로 한다.

제4장에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재활용방법 등) ①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

2.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 받은 제품 제조

3. 「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등록된 비료 또는 부산물비료 제조

4.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고 성분 등록된 사료 제조

5.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 회수

6.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재활용신고) ① 제25조의3 제1항외의 자가 다음 각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따라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자

가.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폐기물(생활폐기물에 한한다), 및 기타 잔재물(음식료품을 제조·유통·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말한다)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나 가축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나. 폐목재(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및 임목폐기물로 만든 톱밥 또는 목재칩을 자신의 농경지에 제조, 퇴비 또는 축사의 바닥재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재활용시설을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

금지 등 재활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없다.

제28조의4(재활용신고자의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활용 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재활용 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 금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재활용 금지로 인하여 그 재활용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재활용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재활용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재활용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의5(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이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해성 등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해성 등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 등의 기준이 설정된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간 등 인증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한 자 또는 제3항의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 대하여 제품의 회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유해성 등의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 방법, 인증절차,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인증기간 등 인증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6(유해성 등 인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28조의5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해성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유통 중인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되는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3회 이상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28조의7(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폐기물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앞에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삽입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제25조제3항에 따른”을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제4항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3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집·운반·처리상황”을 “발생·배출·처리상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처리”를 “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46조제1항에 따른”을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를 (“권리·의무의 승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①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처리·재활용”을 “발생·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6조제1항”을 “제28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처리”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제13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관된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보증) ①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 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0조의3(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명하거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제28조의3제6항에 따른 폐쇄명령 등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재활용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휴업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의4(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3. 삭 제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0조의5(승계자에 대한 처리명령)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0조의4조에 따라 처리이행 보증 주체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명령 이후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의6(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의 처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투기·매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투기·매립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토지 및 건물의 사용을 허용한 소유자·점유자·관리자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조치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40조 제2항 또는 제40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 및 제40조의5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변명이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7(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0조 또는 제40조의3 내지 제40조의6에 따른 조치명령 및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 및 처리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의 제목“(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을“(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을“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6조, 제46조의2,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25조의3”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에게”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5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에게”를 “환경개



선특별회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4조항 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등 환경부령이 정한 시설”로 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로부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제58조의2에 따른 폐기물협회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25조제3항에 따른”을 각각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량제 봉투 또는 종량제 스티커 등을 제작 및 유통시킨 자

제65조제4호 중 “제25조제11항에 따른”을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4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제40조의5, 제40조의6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을 “제13조, 제17조제1항제4호, 제24조의3제4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제24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5조제5항에 따른”을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5조제7항”을 “제25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25조제8항”을 “제25의5제1항”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를 “처리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25조제9항”을 “제25의5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28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 제17조제1항제4호, 제24조의3제4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7조제2항 또는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제68조제1항제2호 중 “제25조제9항”을 “제25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9항에 따른”을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제28조의3제6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재활용을 계속한 자

3의3.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킨 자

6.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8조제1항 제6호의2 중 “제40조제1항”을 “제40조의2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을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40조제3항제1호”를 “제40조의4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40조제8항에 따른”을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5조제11항”을 “제25조의3제4항”으로, “제46조제3항에 따른”을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37조를”을 “제28조의7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제68조제2항제10호 중 “제40조제7항에 따른”을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46조제6항에 따른”을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량제 봉투 또는 종량제 스티커 등을 판매한 자
제68조제3항에 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의2를 위반한 자

4의2.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 제20조제2항, 제25조의3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제68조제3항제8호 중 “기한 이내”를 “기한까지”으로, “제1항제6호”를 “제2항제9호의2”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한 이내”를 “기한까지”로 하며, 제12호 중 “제40조제9항에 따른”을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40조제10항에 따른”을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각각 삭제한다. ☐